# 경북스포츠과학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23.12.28.

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 육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, 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하여 우수선수 발굴 및 경기력과 지도력 향상, 스포츠 과학화, 스포츠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적용)** 본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 경북스포츠과학센터 운영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 사무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2장 명칭 및 소재

**제3조(명칭 및 소재)** 본 센터는 경북스포츠과학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라 칭하며 소재지는 경상북도 내에 둔다.

#### 제3장 조직 및 복무

- 제4조(구성) 본 센터에는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  - 1. 센터장 1명
  - 2. 선임연구원 1명
  - 3. 연구원 2명
  - 4. 측정원
  - 5. 행정전담직원(체육회 직원 또는 센터 직원 중 임명)
  - 6. 그 외 지원인력
- **제5조(직무)** 본 센터 직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  - 1. 센터장은 센터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 - 2. 선임연구원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연구원을 관리하며 연구활동과 체력측정 업무를 수행하다.
  - 3. 연구원은 센터의 업무분장에서 결정한 제반 연구활동과 체력측정 업무를 수행한다.
  - 4. 측정원은 체력측정 보조업무 등 센터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.
  - 5. 행정전담직원은 센터의 행정 사무 업무를 지원한다.
  - 6. 그 외 지원인력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.

제6조(센터의 기능)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선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
- 2. 선수 밀착지원 및 현장지원
- 3. 스포츠과학교실 운영
- 4. 기타 관련 행정업무 등 소관 업무
- **제7조(채용)** 본 센터 직원의 채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운영 사업 운영지침[스포츠과학센터 직원 자격요건 및 채용방법]과 체육회 인사규정에 준한다.
- **제8조(보수 및 복리후생)** 본 센터 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센터장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측정원의 보수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지역스포츠 과학거점 운영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며 체육회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2. 행정전담직원 및 그 외 지원인력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 등은 체육회 보수규정 및 여비규정에 준하며 체육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**제9조(복무)** 본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8장(복무)에 준한다.
- **제10조(직원평가 및 내부승진)** 본 센터 직원은 정기적으로 연 1회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며 세부조항은 별도로 정한다. 또한, 선임연구원의 퇴사 등 공석 발생 시 근무 중인 연구원을 대상으로 내부공모를 통한 채용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운영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.

#### 제4장 사 업

제11조(사업) 본 센터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
- 2. 엘리트선수의 스포츠 과학화 및 스포츠 발전에 관한 사업
- 3. 스포츠과학운영위원회 운영
- 4. 일반/밀착지원 사업 운영
- 5. 스포츠과학교실 운영
- 6. 연구발표회, 학술토론회, 공개강연회, 세미나, 워크숍 등에 관한 사업
- 7.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사업 자료의 개발 및 보급
- 8. 국·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 학술교류
- 9.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사업 및 연구사업
- 10. 기타 경상북도 체육발전 및 센터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제반사업 등

#### 제5장 스포츠과학운영위원회

제12조(구성)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- 1. 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이하로 스포츠과학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- 2.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두며 회장이 위촉한다.
- 3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.
- 4. 위원은 체육관련 분야 및 스포츠과학 전문가 등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 당연직은 체육회 사무처장, 경상북도 체육진흥과장,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,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담당 연구위원으로 한다.
- 5.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본 센터의 센터장으로 한다.
- 제13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하며, 이 경우 임기만료 일은 정기총회 일 전날까지로 한다.
  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- ③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재 위촉되지 않으면 해촉된것으로 본다.
- 제14조(위원회 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
  - 2. 밀착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3.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 - 4. 선수 경기력 향상 관련 사항
  -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**제15조(운영)** ①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.
  - ② 위원장은 제14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한다.
  - ③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.
  - ④ 본 위원회가 의결할 의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그리고 대면회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 할 수 있다.
- **제16조(회의의 비공개와 누설금지)**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, 참석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**제17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체육회 임직원 및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담당 연구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6장 재정 및 회계

**제18조(재정)** 본 센터의 경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교부금과 체육회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9조(회계) 본 센터의 예산 및 회계는 체육회 사무처운영규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정산지침에 따른다.

# 제7장 기타

**제20조(상호협력)** 본 센터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협의회 구성 및 지원 협력할 수 있다.

## **부 칙** (2023.12.28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